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14 선고 2020가합107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혁도

피고1. C

2. D

변론 종결2020. 12. 10.

판결 선고2021. 1. 14.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5,421,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6. 9. F와 혼인하여 원고들을 자녀로 두었고, 이후 F와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 C는 망인의 언니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이다.

다. 망인은 유방암을 진단받아 투병 중 2020. 2. 17.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H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라. 피고 D는 2020. 2. 15.부터 2020. 2. 22.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I조합 J, K조합 L, M은행 N)에서 합계 210,842,600원을 피고 D 명의의 금융계좌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D가 2020. 2. 15.부터 2020. 2. 22.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210,842,600원을 인출하였는바 이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피고들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05,421,300원(= 210,842,6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10,842,600원을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하여 피고들이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A은 피고 C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고 C가 망인의 간병을 하면서 망인의 카드 및 그 카드의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망인이나 사실혼 배우자인 P 몰래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금융계좌로 206,216,000원을 계좌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망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ATM 기기에서

3,000,000원을 출금하여 Q은행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R은 ① 피고 C에 대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C에게 '동의 없이 돈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전 허락 없이 돈을 썼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정하는 대답을 하도록 하였는데 판독 결과 진실 반응이 나타난 점, ② 피고 C가 망인의 병간호를 성실히 수행한 점, ③ 망인이 피고 C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고, 피고 C가 망인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몰래 망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P이 폴리그래프 검사에 동의하다가 갑자기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를 찾지 말라'라고 말한 점, ④ P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상속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C를 통하여 재산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마침 연락이 된 원고 A을 통하여 피고 C를 고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 C를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하였다.

2) 망인의 의무기록에는 '2018. 11. 12. 망인의 여명이 2년에서 3년 정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2. 14. 망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는 망인의 사망 전에 망인으로부터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 망인은 피고 C 및 그 가족들과는 연락을 취하여 온 반면에 원고들과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 C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망인의 병간호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기도 하였던 점, 망인이 자신이 언제든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C에게 2억 원 이상의 돈을 출금할 수 있는 자신의 O카드를 주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위 O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의 예금 상당액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P은 일자불상경 피고 D에게 S 명의의 통장 사진과 함께 '빨리 부치고 전화해라. 너희 가족 모두 다 고소할거다. 계획적으로 한 거 인정된다고 하니까. 너 고소했다고 전화한거야. 너희 가족 모두 도둑으로 고소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P은 피고 C를 통하여 망인의 재산 일부를 나눠받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 A을 통하여 피고 C를 고소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피고 C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사전에 망인 소유의 예금을 피고 C에게 상속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에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한 것은 P이 망인의 사망 시 상속의 순위에서 앞서는 망인의 모친에게 재산이 귀속되니 일단 돈을 빼놓으라고 말하여 이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답변서에서 망인의 유언에 따라 돈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2020. 11. 27.자 준비서면에서는 병수발 등 노동의 대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고들의 이 사건에서의 주장 사이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피고들의 주장은 '피고 C가 망인을 병수발하던 중인 2019. 12. 말경 망인이 피고 C에게 자신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 0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서 사용하라고 하였으나 차마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 직전인 2020. 2. 15. 의식이 있을 때에도 이를 사용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망인이 의식을 잃자 P이 미리 돈을 인출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여 그에 따라 2020. 2. 15.부터 2020. 2. 22.까지 사이에 망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것으로 일관되고, 다만 피고들이 법률적인 조언을 받지 못한 관계로 그에 대한 법률적인 주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장구

판사항경환

판사김은경